

사용성평가연구센터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산학협력 사업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사용성평가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센터는 사용자 제품 평가, 지표개발,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등 사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용성평가센터 시설 및 장비 구축
2. 제품의 사용성평가 수행 및 인증
3. 학술활동과 공동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4. 국내외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5.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소재지) 센터는 계명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4조(부서 및 업무)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가부와 인증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평가부
 - 가. 사용성평가 장비 구축 및 운영
 -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보수
 - 다. 평가시험 업무
2. 인증부
 - 가. KOLAS 운영
 - 나. 사용성평가 시험 및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 다. 인증업무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주임연구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임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부장은 제4조(부서 및 업무)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한다.

제7조(임면) ①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며 총장이 임면한다.

② 각 부장은 센터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면한다.

③ 연구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장의 제청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④ 연구원의 자격, 직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직원으로 한다.

제9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
2.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장비도입에 관한 심의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3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산·학·연 위탁과제 연구비
3. 기타 수입

제14조(회계 및 회계연도) 센터의 회계는 지원기관의 사업관련 규정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산학협력단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예산편성) 사업비 등의 예산편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사업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산학협력단 회계관련 규정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개인정보 보호) 센터는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서 및 상담자료, 사업장 명부, 개인별 명부 등 관련 정보는 관계법령에 맞추어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센터 시설 등의 이용) ① 센터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제 규정과 지원기관의 규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사용자편의평가시험센터 규정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2. 이 지침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